

2016. 6. 14.(화)
제2차 행정문화위원회

2015회계연도
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
검 토 보 고 서
[행정국 소관]

행 정 문 화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손 윤 목

2015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결산 [행정국 소관]

1. 총괄 <2015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결산서 P3, P8>

- 행정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1,900만원
으로 이 중 1,814만 8천원을 지출하고, 85만 2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음.

<표-1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내역>

(단위 : 천원, %)

구 분	지출결정액 ㉠	지출액 ㉡	이월액 ㉢	불용액 ㉣=㉠-㉡-㉢	불용률 ㉣/㉠
행 정 국	19,000	18,148	0	852	4.48
충청북도	6,803,752	6,419,967	336,374	47,411	0.70

-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면, 2015년도 11월 22일 서거한 김영삼 前 대통령 분향소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제반 비용으로 1,814만 8천원을 지출하였음.

<표-2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내역>

(단위 : 천원)

사 업 명			지 출 결정액	지출액	이월액	불용액
분야	세부사업	통계목				
故 김영삼 前 대통령 분향소 설치·운영			19,000	18,148	0	852
일반행정	도정업무수행시책추진	행사운영비	19,000	18,148	0	852

2. 검토의견

- 예비비는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로써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임.
-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·세출예산에 예비비 계상을 의무화 하고 있으며(지방재정법 제43조),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%이내의 일반예비비와(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제1항) 재해·재난목적 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음.
-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여 예산외의 지출이 필요하거나 물가변동으로 이미 확정된 예산으로는 도저히 충당할 수 없는 경우 이어야 하고 또한 소요되는 경비가 신속한 집행이 요구될 때 사용하여야 하겠음.
- 행정국 소관 예비비 사용은 2015년도 11월 22일 서거한 김영삼 前 대통령의 분향소 설치 및 운영을 위해 예비비에서 1,900만원을 편성하여 지출하였음.
- 이는, 故 김영삼 前 대통령의 장례식이 국가장으로 결정되어 도민들이 애도와 추모를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예비비 지출목적에 적합하게 지출되었다고 사료됨.